

□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친구대조표

2025. 9. 9.(화)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제1조 (명칭) ~ 제2조(목적) (생략)	제1조 (목적) ~ 제2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위원 임기 개시일은 <u>4월 1일로</u> 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임기 개시일은 <u>2월 1일로</u> 한다.	“4월 1일”을 “2월 1일”로 문구 변경
제4조 (위원의 자격) ~ 제7조 (위원의 정수) (생략)	제4조 (위원의 자격) ~ 제7조 (위원의 정수) (현행과 같음)	
제8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생략)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선거를 처리하여야 하며, <u>운영위원회 위원에 입 후보하거나 입후보자를 추천 할 수 없다</u> ③ (생략)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u>학교장 이 위촉한 교사 3명으로 구 성하되, 학부모위원 선출시에 는 학부모 3명을 포함한 6명 으로 구성한다.</u>	제8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선거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당해연 도 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년 대표들이 그 기능을 수행하 기로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에 입후 보하거나 입후보자를 추천 할 수 없다” 문구 삭제 문구 변경
제9조 (의원선출) ① (생략) 1. <u>학부모위원</u> 선출관리위원 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 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 야 한다. 2.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u>학부모위원</u> 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u>학부모위원</u> 선출관리위원 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 자의 <u>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 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 된 선거홍보물을 제작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u>	제9조 (의원선출) ① (현행과 같음) 1.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 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 록하여야 한다. 3.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u>정보 등</u> <u>을 학부모 전체가 사용하는</u> <u>전자매체를 통하여 전달할</u> <u>수 있다.</u>	“학부모위원” 문구 삭제 “학부모위원” 문구 삭제 문구 변경

한다. 4.~ 5.(생략) ②~⑥ (생략) 제10조 (임원) ~ 제13조 (기능) (생략) 제14조 (회의) ① (생략) ②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단, 위원의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일로부터 <u>15일 이내</u>에 소집한다. ③~⑥ (생략) 제15조 (의안의 제출, 발의) ~ 제26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생략)	4.~ 5.(현행과 같음) ②~⑥ (현행과 같음) 제10조 (임원) ~ 제13조 (기능) (현행과 같음) 제14조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단, 위원의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⑥ (현행과 같음) 제15조 (의안의 제출, 발의) ~ 제26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현행과 같음)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문구 변경
--	---	----------------------------------

한 동 글 로 벌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규 정

제정 2023. 4. 20

개정 2025. 10.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한동글로벌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선교사들의 자녀와 기독교소년들의 교육을 도와 복음전파에 기여하고, 민족과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한동글로벌학교의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하여 한동글로벌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2월 1일로 한다.(개정 2025.10.1.)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교원위원이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하는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

⑤ 위원이 제1~3항을 위반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이 제1~3항을 위반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항 및 제5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① 위원이 학부모 일 경우 학생의 졸업과 전학할 경우 위원직을 상실하며, 교원 일 경우 퇴직할 경우 위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자녀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②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단,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1.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2.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3.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중일 때
 4.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 ③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 ④ 제4조 또는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
- ⑤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제3장 위원회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선거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당해연도 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년 대표들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로 한다.(개정 2025.10.1.)

제9조(의원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회에서 하되 초등, 중등, 고등과정별로 선출한다. 단, 학부모 전체가 사용하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투표를 대신할 수 있다.

1.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2.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3.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정보 등을 학부모 전체가 사용

하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개정 2025.10.1.)

4.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선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다.
5.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원정수의 2배를 선출하여 선출관리위원장이 추천하고, 이 중 학교의장이 위원정수만큼 위촉하며 위촉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직원회의시에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④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 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 개시 전까지 선출한다.
- 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⑥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교원위원이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0조(임원) ①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소이사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자문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1.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하게 된다.
3. 본회의 개최 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장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을 간사로 둔다. 다만, 행정직원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3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생활관 운영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7.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기타 학교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12.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항
13. 교내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단, 위원의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개정 2025.10.1.)

-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16조(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과 직접 관련된 서류는 학교장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기록을 검토한 후 회의록에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와 교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20조(건의사항 처리)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한다.
-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자문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에서 부담한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23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4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9장 학교발전기금등

제26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부모 및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한다.

② 학교발전기금의 운영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